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단2077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 종결 2020. 11. 13

판결 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86,3이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 3. 23. 부터 2020 . 8. 2. 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를 주식회사 E으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2020. 1. 17.경 보험사고(피고 회사의 주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 불이행)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고서 2020. 2. 21.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자신은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 의무 발생 전 에 이미 피고 회사를 현재 대표이사인 F 등에게 넘겨주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이로써 자신의 위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D의 위 연대보증 채무가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또한,피고 D이 위 F 등과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1) 나아가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판결 참조),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현경

1)민법 제454조 참조.